

[별첨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6년 기준)

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단위: 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감경 대상자: 6~9% 기초생활수급자: 0%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원)
30분 이상	17,450	2,618
60분 이상	25,320	3,798
90분 이상	34,120	5,118
120분 이상	43,430	6,515
150분 이상	50,640	7,596
180분 이상	57,020	8,553
210분 이상	63,530	9,530
240분 이상	70,080	10,512

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22시 이후~06시 이전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산정 수가에 50%를 가산

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부담인 경우)(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13,349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12,03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이상)	50,010	7,515